

국회의원(송언석) 징계안

의안 번호	12943
----------	-------

요구연월일 : 2025. 9. 12.

요 구 자 : 이성윤 · 강선우 · 권향엽
김영환 · 김 현 · 김현정
문금주 · 문대림 · 문정복
박상혁 · 박수현 · 박지혜
박홍배 · 백승아 · 부승찬
유동수 · 이기현 · 이해식
임호선 · 전용기 · 차지호
한민수 의원(22인)

주 문

국회의원(송언석)을 「국회법」 제155조제16호에 따라 징계한다.

징계사유

가.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국회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헌법을 준수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자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하며,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지키기 위해 높은 윤리의식을 가져야 함.

나. 그러나 국민의힘 국회의원 송언석은 2025년 9월 9일 화요일, 본회의장

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진행되던 중 정청래 당대표가 “노상원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다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저 정청래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불귀의 객이 되었을 것입니다.”라는 발언을 하자 국민의힘 국회의원 송언석이 본회의장 자신의 자리에서 “아니, 제발 그리 됐으면 좋았을텐데”라며 정치인 살인을 옹호하는 패륜적 망언과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트린 내란을 찬동하는 망언을 서슴지 않았음.

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작성한 ‘노상원 수첩’의 내용은 수백 명, 수천 명을 살해하려고 계획한 내용이 작성되어 있는 살생부였음. 또한 여의도를 시작으로 전국으로 ‘수거’를 확대한다는 계획과 ‘수거’한 인원들에 대한 ‘처리’방식까지 참혹한 내용이 작성되어 있음. 노상원 수첩대로 내란에 성공했다라면 5·18 광주보다 더 잔인하고 끔찍한 살상행위들이 자행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상기한다면 이는 국회 침탈을 용인하고,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정치인 살인을 용인하는 살인 예비음모죄에 해당하는 반인륜적 반헌법적 작태로 국회의원의 자격을 의심케 하는 발언임. 이는 「형법」 제116조의2(공중협박), 제255조(예비, 음모), 제283조(협박), 제311조(모욕)에 해당할 수 있음.

라. 또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송언석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서 이루어진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조직적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음.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함께 계엄 해제 표결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의혹의 당사자임. 이는 「국회법」 제114조의2에 명시하고 있는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는 자유투표 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이자, 「국회법」 제148조의3에서 금지하고 있는 ‘회의장 출입방해 금지’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

마. 국민의힘 국회의원 송언석은 노상원 수첩의 당사자인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뿐만이 아니라 내란으로 인해 상처 입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사과와 반성은커녕 내란이 완수되지 못해 아쉬워한다는 망언을 통해 또다시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상처를 입히는 참담한 망언을 한 것임. 이는 단순히 망언을 넘어 내란 수괴 윤석열, 살생부 작성 노상원, 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내란 옹호 송언석 등 내란세력임을 자인한 것과 다를 바 없음.

바. 이에 국민의힘 국회의원 송언석을 「대한민국헌법」 제1조, 제77조 「국회법」 제24조, 제25조, 제114조의2, 제148조의3,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1조, 제2조, 「형법」 제87조, 제91조, 제116조의2(공중협박), 제255조(예비, 음모), 제283조(협박), 제307조(명예훼손), 제311조(모욕)에 위반 소지가 있는 바, 「국회법」 제155조제11호 및 제16호에 따라 엄중히 징계할 것을 요구함.